

#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국가 R&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1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단순생산형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설립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 전문연구사업자(이하, 연구사업자) 인증 확대를 통한 지역 R&D 수행구조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
- 지역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혁신성과(신제품·공정 개발 등)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기업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 전국 기업 대상 대구지역 내 소재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인증 취득 희망기업
    - (재 설 립) 과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지원기간 이내 재설립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 ※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50社 내외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 11. 30.

-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선착순 접수·지원하며 컨설팅 기간을 고려하여 '25.10.31.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예정

##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신규 및 재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설립 희망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희망 기업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전문연구사업자 인증	■ 신규 및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인증 희망 기업 ■ 기타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 전문연구사업자(前 연구개발서비스업) : 연구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 매출액 요건을 준수하고 일부 연구개발의 외부수탁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재료·장비의 생산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및 지원분야별 신고(인증) 요건은 [별첨 2] 참조

□ 지원내용

- ① (컨설팅)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분야에 따라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사업자 등 설립을 위한 연구전담요원 자격 또는 연구 시설·장비 및 연구공간 등 요건 검토, 설립에 따른 기업 혜택 안내 등
  -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컨설팅 지원(중복 신청 시 최대 4회까지 지원)
  - \* 컨설팅 비용은 대구TP에서 부담
  - \*\* 컨설팅 횟수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1회 추가 컨설팅 가능
- ② (역량강화교육) 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2회 진행)
  - 연구주제 탐색·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관리, 사업비 집행·정산·관리, 기술료 제도, 연구윤리, 기술이전·사업화 등 R&D 사업 수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기업 수요에 따라 교육시기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③ (정보제공) 지역 R&D 관련 전문기술 자료(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북 등) 제공

□ 추진절차

지원 절차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TP 홈페이지 혹은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dpis.or.kr)</li> </ul>	대구TP
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TP 담당자 메일(yuju@dgtp.or.kr)로 제출</li> </ul>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접수순으로 제출서류 확인(신청서 등)</li> </ul>	대구TP
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신청유형에 따른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컨설팅</li> </ul>	컨설팅전문가 /신청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R&D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량강화교육) 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제공(2회)</li> <li>(정보제공) 지역 R&amp;D 관련 전문기술 자료 제공</li> </ul>	대구TP /신청기업
연구조직 설립 인정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인정 신청 및 취득</li> </ul>	신청기업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만족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li> </ul>	신청기업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기업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 연계지원</li> <li>차년도 R&amp;D 사업 안내 등</li> </ul>	대구TP

###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5.3.24(월) ~ 10.31(금) 수시접수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 온라인 다운로드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메일) 접수

① 사업공고 →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한글) 및 직인날인/서명 후 스캔(PDF)

③ 이메일 접수(yuju@dgtp.or.kr) → 담당자 서류확인 → 접수완료 이후 컨설팅 진행

※ 이메일 제목 :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제출날짜(250300)

※ 이메일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담당자의 접수확인 필요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PDF, 한글파일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1부	PDF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PDF

### 4 문 의 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유선전화 : 053-757-4186, E-mail : yuju@dgtp.or.kr)

### 5 유의사항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될 수 있음

□ 요구양식 이외 양식은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6

## 제외대상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희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외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외 대상 여부는 컨설팅 진행 시 서류검토를 통해 판단

## 별첨1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요건

### □ 인적요건

#### -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li> <li>-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li> </ul>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li>-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li>-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ul>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li> </ul> <p>※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p>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li> <li>- 학사 이상인 자</li> <li>-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ul>

### □ 물적요건

#### - 연구개발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 기자재(부대시설은 별도)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참고

## 별첨2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요건

### □ 전문연구사업자 정의

-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산업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 연구산업이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쉐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R&D 쉐주기에 걸쳐서 산·학·연 주체들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주체

구분	사업내용	유형예시
연구산업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외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짐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 지원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나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 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 □ 전문연구사업자 인정요건

구분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하나, 창업일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함

### - 요건별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 有</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有</li> <li>- 연구관리산업 분야는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 有</li> </ul> </li> </ul>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내에 설치된 연구공간 제외</li> </ul> </li> </ul>

□ 연구산업 세부 업종분류

구분	세부 업종	범위
주문 연구 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시험·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 관리 산업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전략 수립, 사업·과제 기획, 기술·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관리·활용, 기술 이전·거래, 기술 투자·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 장비 산업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측정장비, 방사선 발생·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 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길이·위치 측정장비,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 재료 산업	연구용 물질·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산업협회(www.rndia.or.kr) 참고